

진정서 : 장애인활동보조인 인권침해 피해 시정 요청

○ 차별의 내용

1. 인천지방경찰청은 장애인활동보조인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보건복지부가 이에 호응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습니다.
2.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을 일상적으로 감시하여 노동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사건 경위

1. 2013년 11월 인천지방경찰청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자신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제보를 접수함
2. 인천지방경찰청은, 2013년 국가보조금 관련해서 세금이 많이 누수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에 대해 기획수사를 하기로 함
3. 인천시경은 이를 위해 내사착수보고를 하여 결재를 얻은 후, 이와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구청(남구/남동구)에 자료를 요청함. 구청은 인천시에 의뢰를 하고 시는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의뢰함.
4. 보건복지부는 부정결제 의심자 1천여 명의 명단을 인천시경에 제공함
5. 인천시경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명단을 받고 명단에 누락되어 있는 주민번호 등의 추가 자료를 받기 위해 시청에 다시 의뢰. 시는 구청을 통해 제공기관에 자료를 의뢰함
6. 제공기관 중 일부가 이 사실에 반발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하겠다고 하여 인천지방경찰청은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이나 종결은 아니며, 진행중인 사건이라고 담당 수사관은 말하고 있음

○ 인권침해 사실 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부의 각 기관을 떠돌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취업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개인정보의 제공은 노동자로서 필요한 곳 외에 어떤 경우에도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제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이 입수 목적은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범죄는 이미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전부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은 보 건복지부의 지침 아래 제공되는 교육을 받고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 자체가 국가의 필요로 인해 만들어진 직업군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국가 혹은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는 제공기관에 고스란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의 제공과 임금의 수령 등 노동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자신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경찰서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각 기관 사이로 개인정보를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범죄 수사를 위해 이를 제공받는 것은 일종의 강제수사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은 대상자를 특정하고 영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특정 없이 저인망식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모호하거나 무제한적인 제공요건 하에 사실상 영장주의를 우회하여 대상을 감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이 존재하는 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아무런 잘못 없이 그 개인정보가 상시적으로 경찰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 환경은 특히 노동권을 옹호하는 활동가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에 의해 저질러지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개인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경찰, 중앙정부, 지방정부 어디에서도 이것이 문제라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해왔고 현재도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은 성격의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진정인은 인천시경과 보 건복지부의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 인권침해 사실 2. 노동감시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은 바우처급여 시스템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노동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바우처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이하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이하 ‘활동보조인’)이 만나서 각자의 바우처카드를 같은 기계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결제를 마감하는 순간까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며, 이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바우처 급여가 활동보조인의 임금과 제공기관의 수수료가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바우처결제시스템 자체의 불안정함 때문에 수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계조작에 여러 번 실수를 하다가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심할 경우 임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 자체도 어려운데 바우처 방식으로 인한 잡무가 또 다른 노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일하는 시간만큼만 임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초기부터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를 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 왔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은 이렇게 부정을 의심받아야 하는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 바우처를 통한 임금 지급방식이 아니라 월급제 등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를 해결해 달라고 늘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는 개선하지 않고 노동자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하반기부터 이용자의 서비스 시간이 확대되면서 노동감시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심야 노동에 대한 실시간 감시, 장시간 노동에 대한 감시, 이상결제라고 추측되는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등 활동보조인은 국가재정의 잠재적인 절도범으로 끊임없는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감시를 받는 것은 이용자와 제공기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공기관은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심야결제를 회피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시간 외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다보니, 이로 인해 노동자들과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바우처급여 노동자들은 국가가 만든 직업군입니다. 우리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신체질환 등에 시달리면서도 일을 함으로써 제도를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대우는 사회적으로는 물론 제도 안에서도 가장 낮은 지위에 있으며 크고 작은 사고에 늘 노출되어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게다가 바우처시스템으로 인해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류들(서비스제공기록지, 서비스제공계획서, 실시간미결제에 따른 사유서 등)은 노동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활동보조인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원인은 바우처를 통한 임금지급방식이며, 활동보조인들은 이에 대한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노동감시의 강도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대로라면 우리 활동보조인들은 직업을 그만두기 전까지 늘 노동감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심지어는 기획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활동보조인들은 국가가 만들어놓은 노동자들인데 이제는 국가가 노동감시를 통해 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로 노동자들은 감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노동감시를 통한 인권침해로 고발합니다.

<끝>